

원 · 하청 **상생** (相生)으로 산재는 줄이고 안전수준은 높이고

20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설명회 자료

2023. 10.30(서울)/10.31(대전)/11.1(부산)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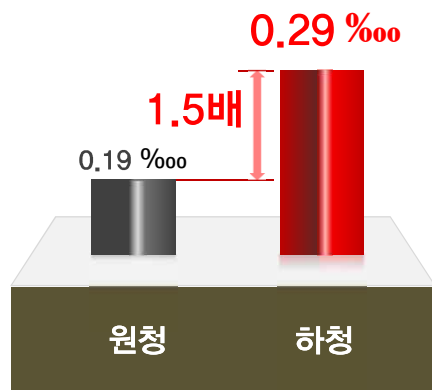
목표 :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기반 마련

원하청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 상생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사망사고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지원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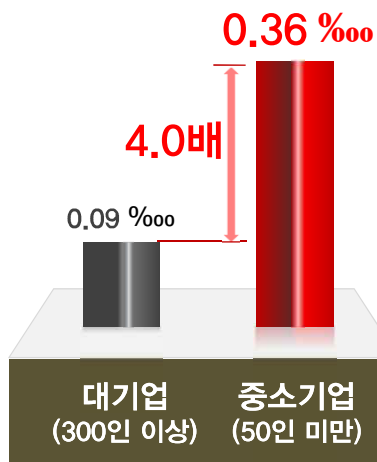
‘ 사고사망만인율’ 원청의 1.5배

〈 2021년 원하청 통합산재관리제도 적용대상 통계 〉
원청 기준 500인 이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등 4개 고위험 업종



원 · 하청 격차

〈 2022년 산업재해통계 〉
전 업종(건설업 제외)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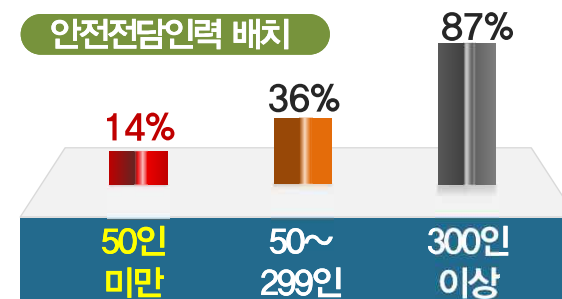


대 · 중소기업 격차

기업 규모별 안전격차 현황

(2022 대한상공회의소)

안전전담인력 배치



중대법에 대한 대응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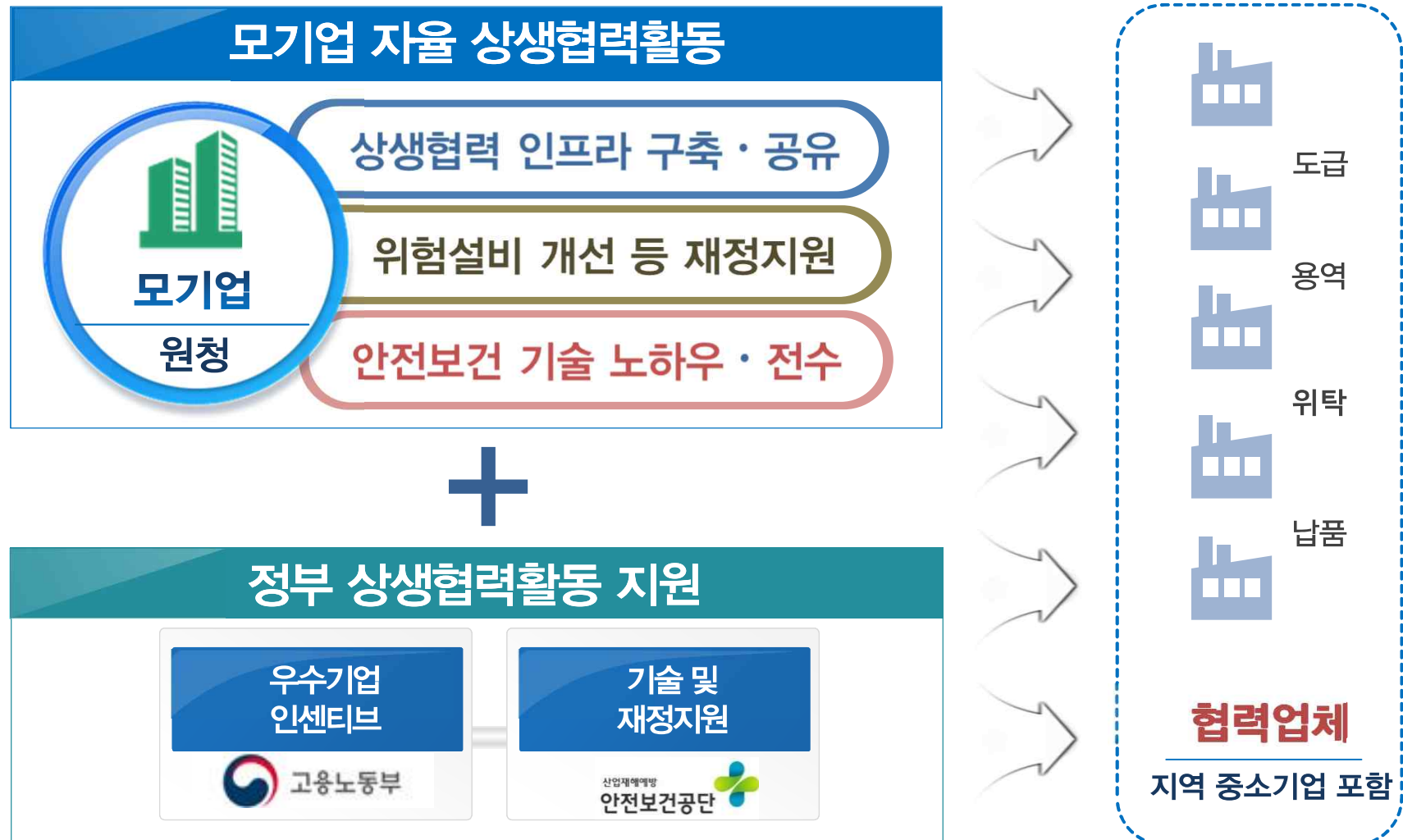
(50인 미만 기업, 2023.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규모 협력업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와 여력이 부족해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

역량있는 모기업과 함께 협력업체 안전수준을 높인다

‘23년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안전보건 상생협력, 정부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재정

Financial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컨설팅 등) **지원**

기술

Technical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 평가

혜택

Incentive

기업의 참여 및 내실 있는 상생협력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부여

재정

Finacial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컨설팅 등) 지원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 현장의 목소리

“소규모 협력업체 재정지원 및 교육 지원 확대 필요”

중소기업 간담회 (22.4월)

“다수의 중소기업은 여건상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워
정부, 대기업의 비용지원은 긍정적”

경총 간담회(22.5월)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정부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22.9월)

컨설팅 지원 분야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3대 사고, 8대 요인 중점

안전관리 역량 향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 (참여 주체별 교육)

- CEO 인식개선
- 관리감독자 역량강화
-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단계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실태 진단

교육
(인식 개선, 역량 강화)

개선 확인



중소 협력업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역량 및 수준 향상



매칭 컨설팅 지원 등 소요비용 분담 (정부, 참여모기업 각 50%)

재정

Finacial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활동 과제 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사업장 상생협력활동 지원 강화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주요 지원 분야

세미나·포럼· 간담회

- (주제)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산업보건관련

안전보건물품 등

- (지원품목) 개인보호구,
지게차 안전장치 등

안전관리 전용 S/W(플랫폼)

- (주제)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

근로자 휴게시설

- (지원종류)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비용

- (주제) 사업장전반의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상기 과제 외 필요 분야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사업비 정산 : 총 소요비용의 50%를 공단이 ⇒ 모기업에 정산

기술

Technical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 평가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모기업의 자율적 지원활동 유도, 상생협력 우수모델 발굴 · 확산)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 전담조직 구성
- 상생협력활동 지원 제도
- 의사소통 강화



협력업체 지원활동

- 컨설팅, 안전활동, 교육 지원
- 유해 · 위험설비 개선지원



협력업체 안전투자

- 안전투자예산 편성
- 도급액 안전보건관리비용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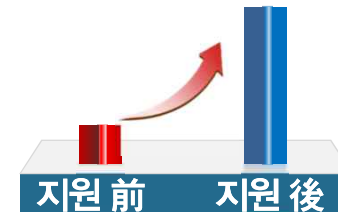
안전보건 성과 배분

- 이익 공유제도 운영
- * 납품단가 조정, 물량배분 확대 등



상생협력 성과 창출도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향상



우수협력업체 인증 · 수상 기반 마련

- 위험성평가 인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KOSHA-MS, ISO 45001 등



혜택

Incentive

기업의 참여 및 내실 있는 상생협력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부여

우수기업 선정으로 기업 주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유도

기업 이미지 제고

고용부 장관 우수기업 선정서

- 고용부장관 명의 우수기업 선정서(패) 제공



대국민 홍보 자원

- 우수기업 활동사례 인터넷, 방송, 언론 등 홍보



기업평가 가점

ESG평가 가점(협의중)

- ESG 평가기관 기업평가 시 우대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 공정거래위원회 평가 가점



감독 유예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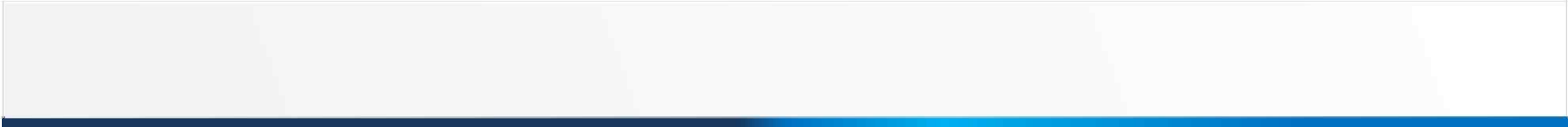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분야 자율실천기간 부여(최대 2년)
* 특별감독 대상은 포함



산재예방시설개선 자원 우대

- 클린, 융자 등 시설개선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2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

2023년 사업 추진실적(10월 기준)

● 사업목표 : 모기업 300개소, 매칭금액 75억원

구분	추진현황
총괄	①모기업 333개(협력업체 3,882개소)(111%) - 협력업체 3,882개소 -> 사내 2,907개소(74.9%), 사외·지역중소 975개소(25.1%) ②매칭금액 63.5억원(결정기준)(84.7%)
<매칭지원 세부 추진현황>	
참여기업현황	모기업 217개소, 협력업체 3,000 개소
결정현황 (정부지원금기준)	63.5억원(컨설팅과제 21.9억원, 안전보건활동과제 41.6억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일시 : 2023. 7. 4.(화)
-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 발표대회 참가기업
(예선 28개소 중 본선 6개소 진출)
 -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
 - 엘지전자(주) 창원2공장
 - SK텔레콤(주)
 - 동국씨엠(주) 부산공장
 -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 용마로지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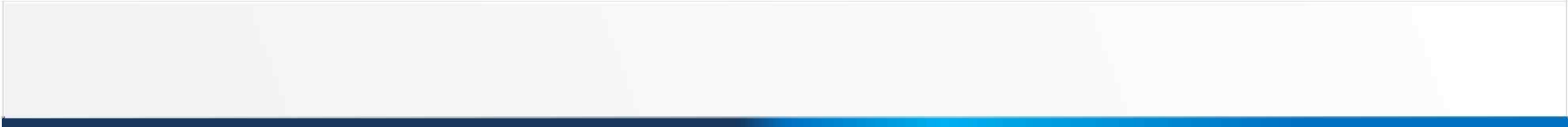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 일시 : 2023. 4. 20.(목)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 참여현황 : 모기업, 협력사 등 250명
 - 고용부장관, 산업안전본부장 등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실장 등
 - 경총 상근 부회장
 - 모기업 및 협력업체 등 220명
- *주요참석 모기업
-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한국철강 등 108개소



지역협의회 발대식

- 내용 : 고용노동(지)청별 지역 협의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상생활동 상호 정보공유, 애로/건의사항 수렴
 - 구성 : 고용노동부(노동(지)청장), 공단(광역(지역)본부장), 모기업(대표)
 - 주요내용 : 상생협력활동 추진경과 및 모범사례 공유, 모기업 및 협력업체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등
 - 추진일정 : `23.7.11(화)~7.28(금)
 - 추진실적 : 고용노동(지)청별 총 28회
- * `24년에는 고용부 청(지청) 주관으로 정례화 예정
⇒ 상호 정보 교류 및 상생 협력 활성화 강화



‘24년 주요 사업내용(안)

* ‘24년 계획(안)은 미 확정 내용임, 공고일(12월초)
이전까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주요 변경사항(안)

구 분	2023년	2024년(안)
사업공고	해당연도 공고(2~3월)	조기공고(금년 12.4 예정) * 12월말 대상 선정
사업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건설업 제외)	
사업목표	모기업 300개소 매칭지원 75억원	모기업 300개소 매칭지원 90억원
매칭지원 비율 (모기업:정부)	50:50	①사내협력업체 50:50 ②사외·지역중소기업 상향조정 검토중
사업수행(공단)	7개 광역본부	
참여조건	자율(비매칭 허용)	매칭지원 참여 필수 * 최소금액 기준은 없음
기타(컨소시엄)	자율	사외·지역중소기업 참여강화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24년 상생협력사업 사업 공고(안)

- 사업 공고일 : 2023. 12. 4.(월), 공고기간 : 12.4(월)-12.15(금)
- 접수기간 : 2023. 12.4(월)-12.19.(화)
- 접수기관 : 공단 7개 광역본부
 - 서울광역본부(서울,강원지역), 부산광역본부(부산,울산,경남지역),
광주광역본부(광주,전주,제주,전남북지역), 대구광역본부(대구,경북지역),
대전세종광역본부(대전,충청지역), 인천광역본부(인천,의정부,부천,고양파주지역)
경기지역본부(수원,안산,성남지역)
- `24년 대상 발표일 : 2023. 12. 27.(수), 내부 선정심사 : 2023.12.26(월)
- `24년 사업목표(안) : 모기업 300개소, 매칭지원 90억원
- `24년 사업대상 : 100인 이상(건설업 제외)모기업, 조선업의 경우 규모제한 없음
- 사업 참여조건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매칭투자 필수(비매칭지원(3유형)폐지)
 - * 매칭 참여에 대한 최소 금액 기준은 없음(모기업 자율투자)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24년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비율

● 기본원칙 : (모기업:정부) 50:50

가. 협력업체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검토 중)

⇒ ①사내협력업체 50:50, ②사외 · 지역중소기업 : 상향조정 검토 중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지역 중소기업
'23년	50:50 (사내·사외·지역 구분없음)	
'24년	50:50	<u>상향조정 검토 중</u>

나. 매칭지원 대상은 300인 미만 사내 · 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예정)

* 본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사업장 단위)은 300인 이상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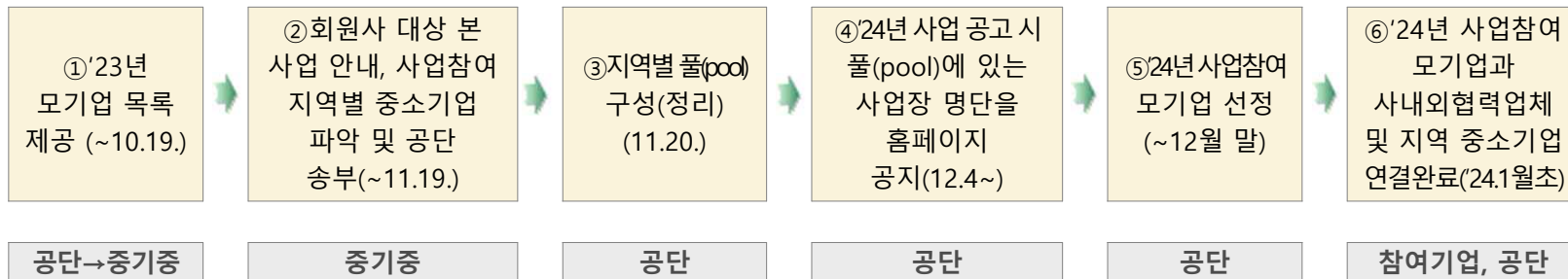
다. 사외 · 지역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해 평가 시 우대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역중소기업 pool 구성>

- 협업방법 : 상생협력사업 참여희망 지역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홍보를 통하여 모집 후, 공단이 그 명단을 참여 희망 모기업에 매칭
- 절차 : 공단이 11월 말까지 지역중소기업 풀(pool)을 구성하여 ⇒ 사업공고 시('23.12.4)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참여희망 모기업은 지역중소기업 확인 후 컨소시엄(모기업-협력업체간 공동그룹)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



* 공단 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에서도 참여희망 지역중소기업 접수 예정
- 공단 홈페이지, K2B 시스템, KRAS 시스템 공지 예정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24년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유형

유형별 지원 내용

1유형

[컨소시엄 자체 필요 분야
상생협력 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 컨소시엄 당 **2억원**
- 컨설팅 : 7개 과제 중 자율 선택
- 추가 : 캠페인, 세미나, 자료제작,
전문교육 지원, 안전물품(매칭비용
총액의 **50%** 한도) 구매 등

2유형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
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 컨소시엄 당 **4억원**
협력업체 당 **3천만원**
- 과제선정조건 : 7개 과제 중 필수
(위험성평가)+자율 선택

- 컨소시엄 : 매칭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 참여 협력업체의
공동 그룹
-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사업장
- **1, 2유형 동시 신청 가능**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24년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주요내용

○ 참여유형 및 주요 지원내용(1,2유형 동시 선택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1유형	컨설팅+안전보건 상생활동	300인 미만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상생활동	▶(활동주제)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이외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 ▶(활동과제) ①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②안전보건 캠페인, ③안전보건물품, ④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⑤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⑥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1식), ⑦안전보건진단, ⑧근로자 휴게시설, ⑨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⑩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참여대상) 모기업+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30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2유형	컨설팅	사내 협력업체(50인 미만만 지원) 300인 미만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등 제외

■ 상생협력사업 컨설팅과제의 종류

과제 구분	지원분야			주요 내용
기본 과제	위험성평가 실행력강화	산업 안전 분야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	①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자율 과제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②3대 사고유형 · 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③폭발 위험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
		산업 보건 분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④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⑤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밀폐공간작업 위험 예방	⑥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등 예방
		안전관리 역량향상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각 과제 별포함	안전의식 확산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 인지 향상 등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안전보건활동 과제(1유형-추가선정과제)

* 매칭지원 컨설팅과제 이외에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사업비 정산: 총 소요비용의 50%를 공단 → 모기업에 정산입금 예정)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 지원기업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미거래 지역 중소기업

3) 예산지원 범위: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③ 출장 여비,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3)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3. 안전보건 물품(지원한도 :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지원품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안전인증 대상품) 등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送氣) 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 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 방한키트

2) ① 자동제세동기(AED), ② 가스농도측정기, ③ 산소농도측정기, ④ 공기치환용 환기팬, ⑤ 감전기, ⑥ 접지저항측정기, ⑦ 절연저항측정기, ⑧ 클램프미터, ⑨ 만능회로측정기,

⑩ 열화상카메라, ⑪ 누전차단시험기, ⑫ 소음측정기, ⑬ 혈압계, ⑭ 조도계, ⑮ 위험물보관저장설비, ⑯ 지게차 안전장치,

3)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등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지원기업 및 근로자(모기업 제외)

(예산지원 범위)

○ 지원품목 1): ① 소모품(방진마스크, 보호복)의 경우 근로자 1명당 3개월 수량(60개 내외), ②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당 1개 (단, 쿨-키트 및 방한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

③ 그 외 품목은 필요 작업조건(공정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개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지원품목 2) : 지원기업 당 1대

- 단,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 –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근로자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 –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게차 안전장치
 - ▲ (지원기준) 자가 소유, 지게차 등록증 및 차대번호 확인 설비(임대 지게차 제외)
 - ▲ (지원대상) 1.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케빈 등), 2.운적석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 ▲ (지원수량) 지원기업 보유 대수

○ 지원품목 3) : 지원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제작범위 :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

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지원기업 CEO,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모기업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 1) 주제 :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
- 2) 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7. 안전보건진단

- 1)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
-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3) 중복지원제외 : 안전분야 또는 체계구축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안전진단 참여 불가
보건분야 컨설팅과제 참여 시 → 종합진단, 보건진단 참여 불가
- 4)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5)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추가선정과제)

8. 근로자 휴게시설

1) 지원종류(TYPE) :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별첨2 참고)를 충족하여야 함

2)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3)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1)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10.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지원결정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및 물품

2) 기타 :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상기 1~5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승인 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단,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
(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 부가세는 기업의 매입·매출세액 환급에 따라 지원금에서 제외함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안)

인센티브 항목	주요 내용
① 고용부 장관 우수기업 선정서	고용노동부 장관 선정서(패) 제공 (유효기간 : 1년)
② ESG 평가지표 반영(협의중)	사회평가(S)분야(한국 ESG기준원) - '안전보건지표' 및 '사회공헌활동 지표' 분야
③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동반성장 평가 가점(공정거래위원회, 3점/100점)
④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부여 기간: 최대 2년 (확인서 발급 예정) - 참여기간 1년,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⑤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 우대	50인 미만 참여 협력업체 가점 등 우대
⑥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우대	참여 협력업체 가점 등 우대
⑦ 기업 이미지 제고지원	우수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인터넷, 방송, 언론 등)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참고) 한국 ESG 기준원 평가모형 반영(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I. 리더쉽과 거버넌스	가. 전략과 방침	VI. 지속가능한 소비	가. 소비자권익 보호 거버넌스 나. 소비자 권익 침해위험관리 다. 소비자와의 소통 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보상 마. 지속가능한 소비진작
II. 노동관행	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고용 나. 일과 생활의 균형지원 다. 건전한 노사관계형성 라. 근로자 역량 개발 및 지원	VII.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다. 정보보호 투자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III. 직장내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 거버넌스 나. 안전보건 위험관리	VIII.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가.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 나. 지역사회 위험관리 다. 지역사회 참여성과 관리
IV. 인권	가. 인권경영 거버넌스 나. 인권위험관리	IX. 이해관계자 소통	가. 사회책임경영 정보 공개
V. 공정운영 관행	가. 공정운영 거버넌스 나. 공정운영 위험관리 다. 동반성장 기반 확립 라. 공급망 위험관리		

⇒ (협의내용) 'III. 직장내 안보건의 관련', 'VIII.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평가분야, 각 항목별 일정 점수 이상 기본점수 부여토록 세부 가점 비율(5~??%) 설정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매칭지원 컨설턴트 지원단가 조정(안)

- `24년 적용 엔지니어 노임단가 임금 기준표에 따라
매칭지원 지원단가 조정 예정
-> 매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기타 분야)”에 따라
노임단가 등 반영 예정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컨설턴트 지원단가(등급 및 자격기준)-23년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점검및 컨설팅	기술사	· 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전기, 화공, 인간공학, 안전분야, 보건분야 등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800,000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50,000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간호사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수행한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60,000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50,000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00,000
교육	(가)군	· 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00,000
	(나)군	· 그 외		240,000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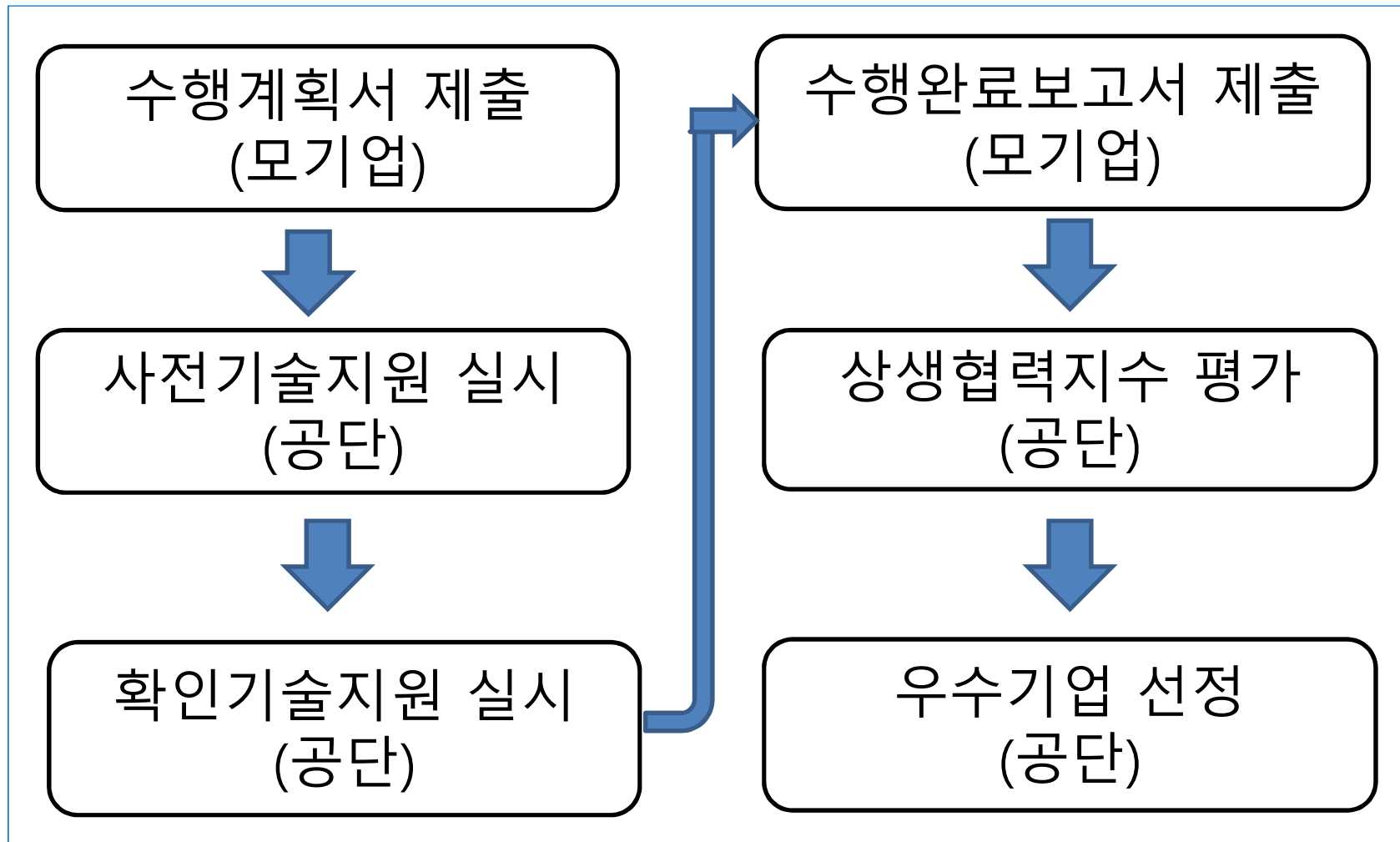
■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사항

- `24년 사업대상 선정 시 기본방향 : 사외 · 지역중소기업 참여 시 우대(예정)
- * (참고) `23년 사업대상 선정 기준표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 고
총 합				100점	
■ 공통적용 항목				80 점	
① 100인 이상 모기업 위험업종 ▪ 사업의 종류에 따라 8점~20점				최대 20점	▪ 위험업종 배점기준 참고(첨부1)
② 중대재해 취약 협력업체 참여				최대 30점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1개 협력업체당	0.5점	1.5점	2점		
구분	50인 미만 협력업체		협력업체 중 위험업종		
1개 협력업체당	0.5점		0.3점 또는 0.5점		
* 협력업체에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③ 협력업체의 컨설팅 과제 참여(매칭지원 포함) - 매칭비용 지원 컨설팅 1개 과제 당 2점 - 모기업 지원 컨설팅(매칭비용 미지원) 1개 과제 당 1점 - (1유형) 모기업 단위 추가 선정과제 1개 과제 당 2점				최대 30점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20점	▪ 지역의 산업구조/고용현황/재해특성/지역적 이슈 등에 따라 자율선정
■ 가 점				20점	
① (가점) 최근 3년(20~22년) 공생협력 우수발표 대회 참여 모기업 - 대상 10점, 최우수상 8점, 우수상 6점, 참여 4점				10점	▪ 본부일괄 제공
② (가점) 공생협력 참여 우수등급(A등급) 모기업 - 최근 3년(20년~22년) 공생협력 참여 모기업 중 우수등급(A등급)사업장				10점	▪ 본부일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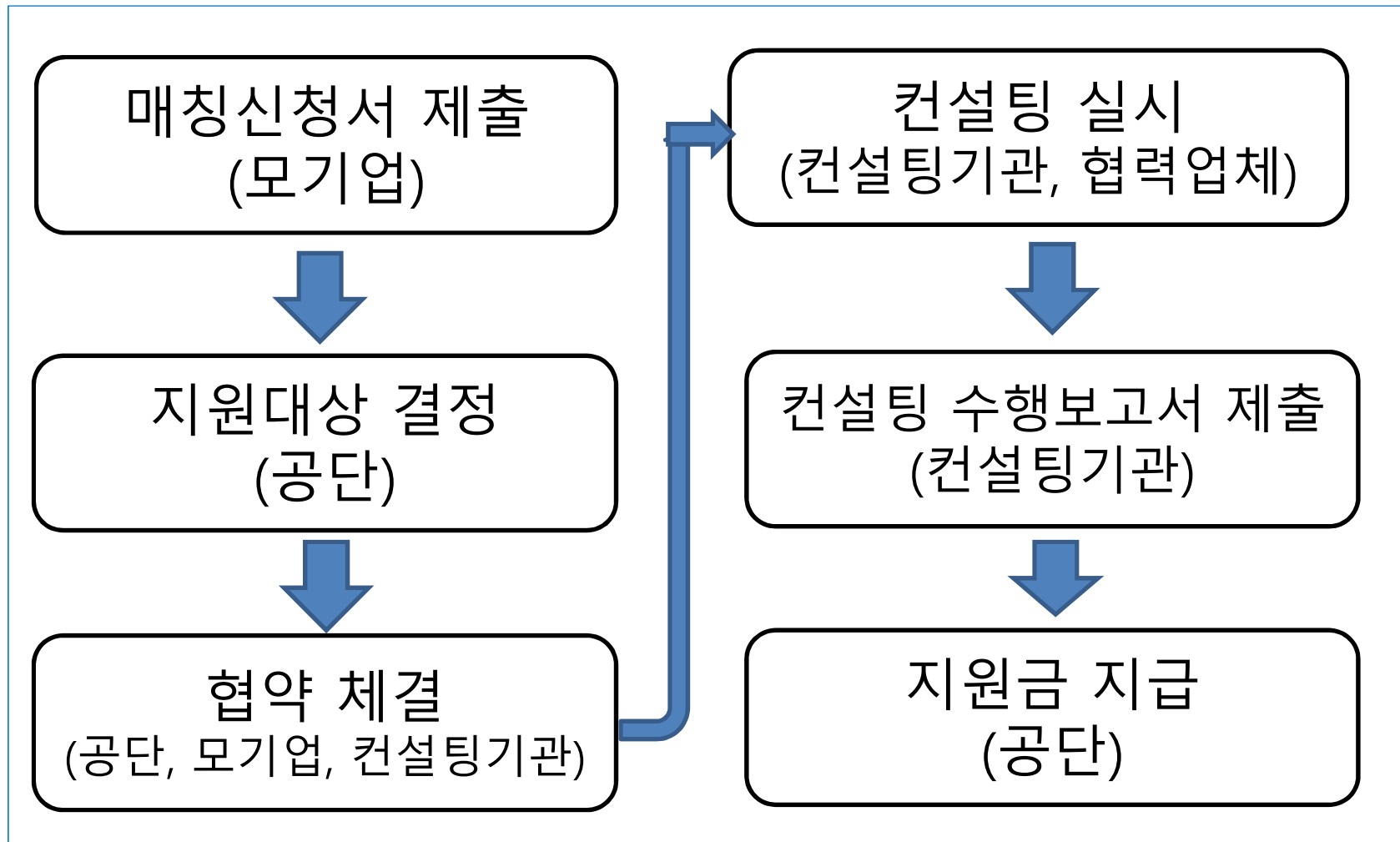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기술지원 · 평가 절차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 매칭지원 절차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2023. . .

모기업명 :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

A1 안전보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및 이력 공유

1. 상생협력활동 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

□ 자가진단

평가 내용	점검 결과	개선계획 제약여부	
		타당	비타당
○ 조직 내 사내의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부서, 팀 등 포함, 이하 같은)이 구성되어 있음		√	
○ 조직 내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음	√		
○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보건업무(또는 상생협력사업) 전담 조직이나 업무 담당자는 없으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을 평가 또는 지원하는 조직(구대부서 등)이 있음			
○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음			

【참고사항】

【평가기준】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본사에만 구성되어 있고 해당 본사 조직원이 각 지사/지점/사업장(공장)의 상생협력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인정 가능(사업장 내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 외 환경, 소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전담조직으로 보임
- ※ 상생협력활동 :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등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

【확인내용】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 모기업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지점 또는 관련 내부문서 등을 반드시 확인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등의 평가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내부 문서 등을 확인

□ 개선계획

성과목표(KPI) 설정
○ (해식)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조직 설치 ○ (해식)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 (해식)협력업체 지원 조직 설치 ○ (해식)지원 업무 담당자 배치
(필)

□ 중단 검토결과(개선이전)

24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2023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2023 . . .

모기업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2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1. ■ 매칭 컨설팅 지원 실행예산 현황(모든 지원기업의 컨설팅 비용 합산 기재)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 1유형 : 182,00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활동과제 포함 ■ 2유형 : 34,60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소요비용 총액	226,600,000 원	모기업 부담금 100,800,000 원 공단 부담금 125,800,000 원

■ 1유형 (컨설팅 과제)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추진 과제	주요 연월수	컨설팅 담당자(명)	단가(원)	주요 실행 일수		세부내역 (주요연월수×단가× 주요횟수)	계(원)
				컨설팅	확인		
위험성평가 기법 익히기	1월	기술사	800,000	8일	2일	1월 × (800,000×80,000) × 5일 = 4,400,000 원	9,250,000
	1월	특급기술자	650,000	8일	2일	1월 × (650,000×80,000) × 5일 = 3,650,000 원	
교육	1월	7시간	300,000	2회, 2시간		1월 × 300,000 × 2시간 × 2회 = 1,200,000 원	
지원기업 1 소계 (‘지원기업1’에는 협력업체명 기재)							9,250,000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월	기술사	800,000	5일	8일	1월 × (800,000×80,000) × 8일 = 7,040,000 원	14,080,000
	1월	특급기술자	650,000	5일	8일	1월 × (650,000×80,000) × 8일 = 5,840,000 원	
교육	1월	7시간	300,000	2회, 2시간		1월 × 300,000 × 2시간 × 2회 = 1,200,000 원	
지원기업 2 소계							14,080,000
교육							
지원기업 3 소계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원원단위 절사)							23,3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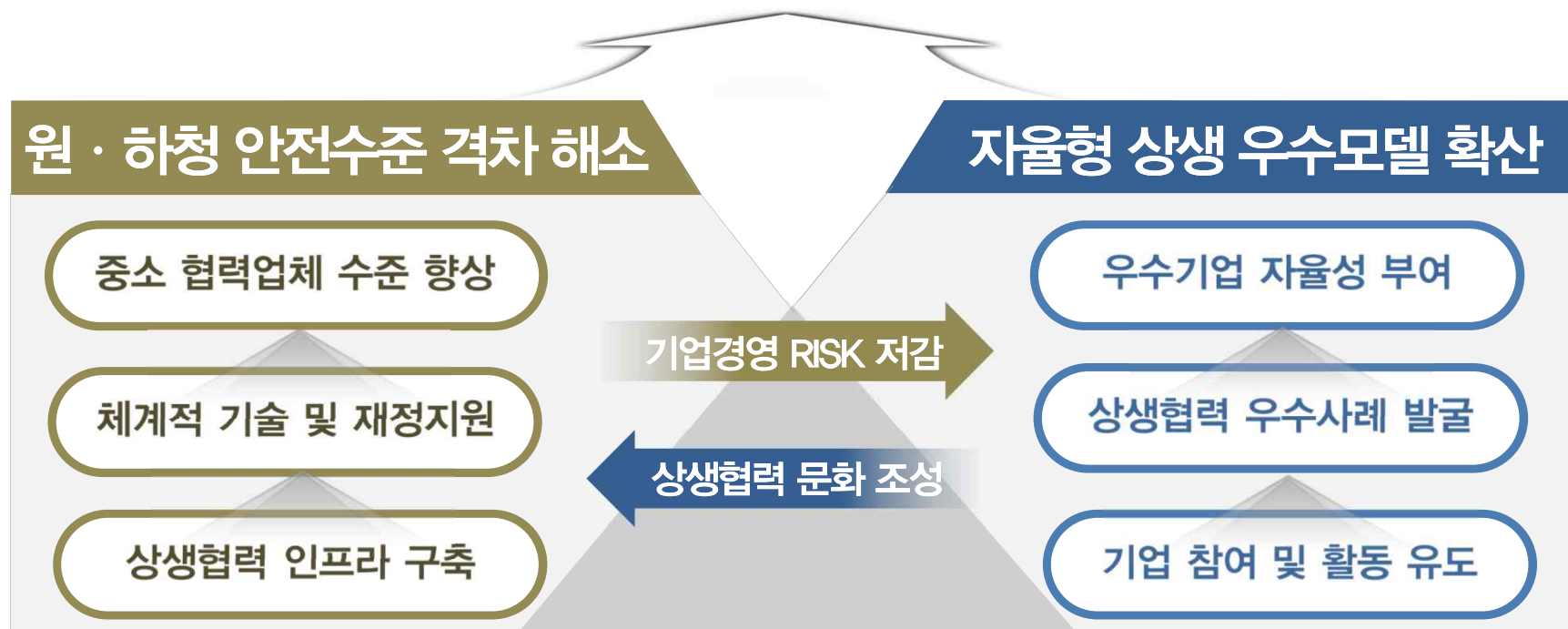
* 단가에는 출장여비를 포함한 단가까지(관내 → +20,000원/일, 관외 → +80,000원/일)

※관내,관외 기준은 컨설팅기관 소지지 기준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출장비 계상 제외

❖ 지속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사업 목표

원 · 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기반 마련



재정 중소 협력업체 컨설팅 비용지원 + **상생협력활동 지도 · 평가 기술**

< 부탁의 말씀 >

- ① 동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행)
- ② 설명회 이후, 사외·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노력 당부
- ③ 매칭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장 예산 확보 노력 당부
- ④ 지역 중소기업 풀 구성에 참여하도록 주위 사업장에도 홍보 요청

원하청 상생협력으로

산재사망사고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